

##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51177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5-11-27 www.laonatoacademy.com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04-30

## LAONATO 뷰티스쿨

### 정 보 공 개 서

(주)미지에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미지에듀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난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77, 301호 (서교동, 대창빌딩)

대표전화 : 070-4652-3588

팩스번호 : 02-333-3456

가맹사업부전화: 070-4652-3588

## < 목 차 >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별첨서류

- [별첨1] 서식: 가맹점사업자 인근의 가맹점사업자현황
- [별첨2] 서식: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 [별첨3] 가맹본부 매출 자료(2021년 ~ 2023년)

###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 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
|-------------|----------------------|----------------------------------|---------|---------------|--------------|
| (주)<br>미지에듀 | LAONATO<br>뷰티스쿨 외 1건 |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77, 301호(서교동, 대창빌딩) |         |               |              |
|             | 법인 설립등기일             | 사업자등록일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2012.02.15           | 2012.02.15                       | 이미애     | 070-4652-3588 | 02-333-3456  |
|             | 법인등록번호               | 110111-4796087                   | 사업자등록번호 |               | 109-86-33419 |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 상호/이름 | 영업표지                 | 주 소                              |               |             |
|----|-------|----------------------|----------------------------------|---------------|-------------|
| 임원 | 이미애   | LAONATO 뷰티스쿨<br>외 1건 |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 77, 301호 (서교동, 대창빌딩) |               |             |
|    |       |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이미애                              | 070-4652-3581 | 02-333-3456 |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점사업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라오나토 뷰티스쿨’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 구 분      | 내 용                                                                                  | 추가 설명 |
|----------|--------------------------------------------------------------------------------------|-------|
| 명 칭      | LAONATO 뷰티스쿨                                                                         | -     |
| 상 호      | LAONATO 뷰티스쿨 OO점                                                                     | -     |
| 상표(서비스표) |  | 국문    |
|          |  | 영문    |
| 광 고      | -                                                                                    | -     |

브랜드 안내



LAONATO 뷰티스쿨

‘라오나토’는 순 우리말인 즐거움을 뜻하는 ‘라운’과 선물을 뜻하는 ‘아토’의 합성어로 즐거운 선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 방송, 광고 업계의 전문가들과 (주)미지에듀가 함께 수 년에 걸쳐 연구·개발한 메이크업 전문가를 위한 공식 브랜드입니다.

LAONATO 뷰티스쿨은 라오나토 전문 실무진의 교육과 방송 시설 인프라를 지원받아 타 교육기관과 차별화된 전문교육 시스템 및 실무 중심의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송미용분야 전문가 양성 교육 기관입니다.

뷰티관련 산업은 21세기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의 폭발적인 발전과 더불어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 분야이며, 특히 국내에서는 한류열풍의 지속적인 성장세와 맞물려 문화 수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류의 해외 약진과 더불어 LAONATO 뷰티스쿨은 커리큘럼과 교재뿐만 아니라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 등의 현지 교·강사, 방송국 스태프 실무교육까지 전담하며 한국의 분장예술 교육을 세계에 알리는 선두에 서서 당당하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LAONATO 뷰티스쿨은 비교 우위의 경쟁력 있는 학생 배출을 목표로 합니다.

방송국 분장팀, 미용팀, 의상팀 및 뷰티업계의 현장경험이 풍부한 교·강사진들이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
|---------------|--------------------------------------------------------------------------------------------------------------------------------------------------------------------------------------------------------------------------------------------------------------------------------------------------------------------------------------------------------------------------------------------------------------------------------------------------------------------------------------------------------------------------------------------------------------------------------------------------------------------------------------------------------------------------------------------------------------------------------------------------------------------------------------------------------------------------------------------------------------------------------------------------------------------------------------------------------------------------------------------------------------------------------------------------------------------------------------------------------------------------------------------------------|
| <p>브랜드 안내</p> | <p>또한, 실무교육뿐만 아니라 현장 전문가로서의 마음가짐 및 자세 등을 고려한 Etiquette 교육 및 인성면접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비교 우위의 경쟁력 있는 전문 인재 양성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p> <p>LAONATO 뷰티스쿨의 ‘방송연수 과정’은 ‘방송국 현장 실무 교수진에 의해 방송 프로그램에 실전 투입’되어 진행되는 LAONATO 뷰티스쿨 Level Up program을 통한 미래주도형 글로벌 인재를 양성합니다.</p> <p>빠르게 변화, 발전하는 영상 및 미디어 제작 기술에 보조를 맞추어 현장 전문가를 위한 Special Intensive Course로써 현장에 있는 전문가 및 실무자가 특수한 분야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현재 영상제작 기술에 맞는 트렌드를 단기간 집중적으로 마스터하는 과정입니다.</p> <p>특수분장, 수염분장, 노인분장, 몬스터분장, 대머리분장, 상처분장, 테드 마스크 제작, 방송미용 등 다양하게 세분화된 여러 프로그램에서 진정한 마스터로 업그레이드 됩니다.</p> <p>LAONATO 뷰티스쿨은 차별화된 교육환경 인프라를 제공합니다.</p> <p>LAONATO 뷰티스쿨은 방송국 분장팀의 현장감 넘치는 실전 강의와 학생들에게 유리한 현장실습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며,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기자재와 실습실, 방송 인프라는 교육생이 수료 후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교육환경입니다.</p> <p>분장예술분야는 21세기 성장동력산업인 문화 콘텐츠 기술(CT, Culture Technology)의 한 분야이며 공연문화와 영상시장의 질적 양적 성장에 함께 커지는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Sci-Fi(공상과학), Horror, Fantasy 등의 영화들이 흥행 시장의 주류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른 특수효과 부분의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이들을 육성할 수 있는 Lab 환경의 실습 위주 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p> <p>LAONATO 뷰티스쿨은 현장실습 및 Staff 등으로 참여하여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며,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인력 수급의 구조상 현직 방송국 분장팀과 유명 프로덕션에 재직 중인 실무진의 강의와 함께 소중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의 장을 마련합니다.</p> |
|---------------|--------------------------------------------------------------------------------------------------------------------------------------------------------------------------------------------------------------------------------------------------------------------------------------------------------------------------------------------------------------------------------------------------------------------------------------------------------------------------------------------------------------------------------------------------------------------------------------------------------------------------------------------------------------------------------------------------------------------------------------------------------------------------------------------------------------------------------------------------------------------------------------------------------------------------------------------------------------------------------------------------------------------------------------------------------------------------------------------------------------------------------------------------------|

|      |                                                                                                   |
|------|---------------------------------------------------------------------------------------------------|
| 제휴업체 | <p>방송사</p>      |
|      | <p>협력사</p>      |
|      | <p>브랜드</p>      |
|      | <p>협력협회</p>     |
|      | <p>산학협력대학</p>  |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연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영업<br>이익 | 당기<br>순이익 |
|-------|---------|---------|---------|-----------|----------|-----------|
| 2021년 | 603,931 | 421,992 | 181,938 | 891,113   | 91,807   | 105,700   |
| 2022년 | 808,804 | 527,948 | 280,856 | 1,012,774 | 95,506   | 98,917    |
| 2023년 | 690.393 | 470.701 | 219,692 | 905,336   | -60,673  | -61,163   |

※ 별첨3 참조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1)과 같습니다.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이름  | 현 직위 | 사업경력                |              |          |
|----------------|-----|------|---------------------|--------------|----------|
|                |     |      | 기간                  | 직위           | 담당 업무    |
| 가맹사업<br>관련 임원  | 이미애 | 대표이사 | 2012.02.15.<br>~ 현재 | (주)미지에듀 대표이사 | 회사 업무 총괄 |
| 가맹사업<br>비관련 임원 | -   | -    | -                   | -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임원수(명) |     | 직원수(명) |
|---------------|--------|-----|--------|
|               | 상근     | 비상근 |        |
| 2023년 12월 31일 | 1      | 0   | 7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 관계   | 상호/이름   | 구분      | 기간           | 사업내용                                                     |
|------|---------|---------|--------------|----------------------------------------------------------|
| 가맹본부 | (주)미지에듀 | 가맹사업 경영 | 2012.2. ~ 현재 | SBS 아카데미 뷰티스쿨<br>(등록번호: 20120100170)이라는<br>영업표지의 교육사업 경영 |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명칭                                                                                  | 권리내용                 | 등록 및<br>등록신청<br>여부(일자)              | 출원번호 및<br>등록번호       | 소유자<br>(등록신청자) | 존속기간<br>만료일<br>(가맹본부의<br>사용기간) |
|-------------------------------------------------------------------------------------|----------------------|-------------------------------------|----------------------|----------------|--------------------------------|
| LAONATO                                                                             | 외장,<br>인테리어,<br>영업표지 | 2011. 1. 20. 출원<br>2011. 12. 29. 등록 | 출원 제40-2011-0003327호 | 이미애<br>(이주형)   | 2031. 12. 29<br>(2031. 12. 29) |
|                                                                                     |                      |                                     | 등록 제 40-0896877호     |                |                                |
|  | 도형복합,<br>제품상표        | 2015. 4. 10. 출원<br>2016. 3. 15. 등록  | 출원 제40-2015-0026370호 | 이미애            | 2026. 3. 15<br>(2026. 3. 15)   |
|                                                                                     |                      |                                     | 등록 제40-1167128호      |                |                                |

당사는 상표권자에게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아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15년 12월 31일

2. 해당 가맹사업 연혁

| 가맹본부 상호 | 영업표지                | 대표자의 이름 | 가맹사업 경영 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주)미지에듀 | LAONATO<br>메디컬 뷰티스쿨 | 이미애     | 2015. 12. 31 ~<br>2016. 12. 12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71<br>(등촌동, 경향교회회관 4층)  |
| (주)미지에듀 | LAONATO<br>메디컬 뷰티스쿨 | 이미애     | 2016. 12. 13 ~<br>2017. 3. 31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05<br>(서교동, 동원빌딩 4층)    |
| (주)미지에듀 | LAONATO<br>뷰티스쿨     | 이미애     | 2017. 3. 31 ~<br>2023. 7. 18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05<br>(서교동, 동원빌딩 4층)    |
| (주)미지에듀 | LAONATO<br>뷰티스쿨     | 이미애     | 2023. 7. 19 ~<br>현재            |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77,<br>301호 (서교동, 대창빌딩) |

3. LAONATO 뷰티스쿨 업종

| 영업표지         | 업종  |                   |
|--------------|-----|-------------------|
| LAONATO 뷰티스쿨 | 대분류 | 소분류               |
|              | 이미용 | 프랜차이즈사업 / 미용관련서비스 |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 지역 | 2021.12.31. |      |      | 2022.12.31. |      |      | 2023.12.31. |      |      |
|----|-------------|------|------|-------------|------|------|-------------|------|------|
|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 전체 | -           | -    | -    | -           | -    | -    | -           | -    | -    |
| 서울 | -           | -    | -    | -           | -    | -    | -           | -    | -    |
| 부산 | -           | -    | -    | -           | -    | -    | -           | -    | -    |
| 대구 | -           | -    | -    | -           |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    | -           | -    | -    |
| 광주 | -           | -    | -    | -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    | -           | -    | -    |
| 강원 | -           | -    | -    | -           |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    | -           | -    | -    |

| 지역 | 2021.12.31. |      |      | 2022.12.31. |      |      | 2023.12.31. |      |      |
|----|-------------|------|------|-------------|------|------|-------------|------|------|
|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 충남 | -           | -    | -    | -           | -    | -    | -           | -    | -    |
| 전북 | -           | -    | -    | -           | -    | -    | -           | -    | -    |
| 전남 | -           | -    | -    | -           |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    | -           | -    | -    |
| 경남 | -           | -    | -    | -           | -    | -    | -           | -    | -    |
| 제주 | -           | -    | -    | -           | -    | -    | -           | -    | -    |

#### 5. 최근 3년간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 수

(단위: 개)

| 연도   | 연초 | 신규 개점 | 계약 종료 | 계약 해지 | 명의 변경 | 연말 |
|------|----|-------|-------|-------|-------|----|
| 2021 | -  | -     | -     | -     | -     | -  |
| 2022 | -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

#### 6. 해당 가맹사업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단위: 개)

| 구분   | 상호/이름   | 영업표지                | 정보공개서<br>등록번호 | 업종   | 가맹점/직영점의 수  |             |             |
|------|---------|---------------------|---------------|------|-------------|-------------|-------------|
|      |         |                     |               |      | 2021.12.31. | 2022.12.31. | 2023.12.31. |
| 가맹본부 | (주)미지에듀 | SBS<br>아카데미<br>뷰티스쿨 | 20120100170   | 교육사업 | 27/0        | 28/0        | 27/0        |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 해당 없음

####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연도   | 영업중인 가맹점 수 | 평균 영업기간 |
|------|------------|---------|
| 2023 | 0          | 0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 없음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해당 없음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사 가맹본부와 예치계약 된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치기관 상호 | 담당 부서 | 주소          | 전화번호         |
|---------|-------|-------------|--------------|
| 국민은행    | 발산역지점 | 인터넷뱅킹 또는 창구 | 02-2668-2984 |

### 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가맹본부와 계약한 예치 은행창구에서 예치 신청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뱅킹에 의한 예치방법은 가맹금 예치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당 가맹본부 상호를 찾아 예치금액을 입력하여 예치하시면 됩니다.

### 2) 귀하는 또한 예치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2번의 가 ~ 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1.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 없음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전기증설, 철거공사, 화장실, 소방시설, 냉난방기기, 냉동냉장기기, 기타 실외공사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함으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 대상 | 예치 여부   | 비고    |
|--------------------------|-------|---------|-------|
| 최초 가맹금                   | 예치기관  | 없음      | 면제    |
| 보증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 금액 |
| 인테리어, 설비, 기기, 비품 등 기타 비용 | 자율선택  | 예치하지 않음 | 추정 금액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부가세 포함)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가맹비 | 0  | -     | -    | -           | 없음 |
| 교육비 | 0  | -     | -    | -           | 없음 |
| 총계  | 0  | -     | -    | -           | -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종료일 3개월 이내, 미납채무가 있을 경우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 등을 정산한 후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단위: 천원 / 부가세 없음)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 비고                               |
|----------------|--------|----------|-----------------------------------------------------|----------------------------------|
| (현금)보증금        | 10,000 | 계약 후 익일  | 상호사용료 및 물품대금의 미지급, 수강생 환불 의무의 불이행 등 가맹본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잔존 채무, 손해배상액 등을 정산한 후 반환, 보증약정제결 |
| 이행보증보험 또는 담보제공 | 20,000 | 계약 후 2주내 |                                                     |                                  |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부가세 없음)

| 구분      | 금액     | 비고                    |
|---------|--------|-----------------------|
| 가맹비     | 0      | 없음                    |
| 교육비     | 0      | 없음                    |
| (현금)보증금 | 10,000 | 현금수령 금액만 예치<br>부가세없음. |
| 합계      | 10,000 | -                     |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부가세 포함, 80평기준)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면적<br>33㎡당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비고   |
|---------|------|---------|---------------|--------|-------|------|
| 인테리어    | 자율시공 | 96,000  | 1,200         | 자율시공   |       |      |
| 학원가구/집기 |      | 24,000  | 300           |        |       |      |
| 초도물품    | 가맹본부 | 10,000  |               | 가맹계약 시 | 미공급 시 | 교육자재 |
| 총계      |      | 130,000 |               | -      | -     | -    |

※ 상기 표에 기재된 인테리어, 학원가구/집기 부분은 가맹본부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가맹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공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요 금액은 추정치입니다.

※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원의 설립 및 인허가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갖추는 것 외에 당사가 특별히 요구하는 시설 기준은 없으며 인테리어는 직접 시공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시공 시 가맹본부의 철저한 감리(CI, BI, 상표의 위치, 규격 준수, 통일적인 이미지를 위한 설치 여부 등)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선정 주체  | 선정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스스로 가맹점의 입지를 조사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 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해당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상권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인근 가맹점의 영업지역 등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가맹점 입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교육 기준            | 계약·채용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소정의 결격사유가 없을것                     |
| 강사     | 특별한 기준 없음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2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일것 |
| 종업원    | 특별한 기준 없음        | 특별한 기준 없음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납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귀하가营业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 부가세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광고 분담금                | 현재 광고 분담금은 당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가 정액 또는 정률로 분담하기로 한 광고비 등의 내역은 없습니다.<br>(다만, 추가 분담이 필요한 경우 전국캠퍼스 사장단회의를 통해 분담금액 및 지급방법 등을 결정) |                         |                      |               |             |                                     |
|                       | 가맹본부                                                                                                                            | 100%(가맹본부) : 0%(가맹점사업자) | -                    | -             | -           | 가맹점 모집 광고 시                         |
| 상표사용료                 | 가맹본부                                                                                                                            | 월1,100 ~ 월5,500         | 매월 5일 (선불)           | 잔여 일수 계산하여 반환 | -           | (영업지역의 범위 등 시장규모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시 결정)  |
| 홈페이지 제작/이용료           | 가맹본부                                                                                                                            | 275                     | 매월 5일 (선불)           |               |             |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자율선택                                                                                                                            | 협의                      | 협의                   | 실시 전          | 실시 후        |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 지연이자                  | 가맹본부                                                                                                                            | 12%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 -           | 대금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자율선택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             | -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항목 참조 |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는 없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1)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위 점검의 경우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점검기준에 의하여 점검할 수 있습니다.
- (2) 당사는 현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영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당사가 정한 기준 및 학원회계기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리에 따라 매출현황 수강생 등록현황, 상품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회계 관련 자료 및 매출계획을 가맹본부 요청 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별도의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의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업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 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 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 하에 가맹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해당 가맹사업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단 양도 시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는 받아야 합니다. 또한,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계약 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LAONATO 뷰티스쿨”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영업표지,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LAONATO 뷰티스쿨"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LAONATO 뷰티스쿨 가맹본부가 제공한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계약종결을 이유로 당사가 이미 제공한 공급물품, 비품, 소모품등에 대해 당사에 반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계약이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반 영업표지를 즉시 철거하거나 제거하여야 하며, 철거, 원상복구의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귀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침해로 인한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외에 다른 품목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해당 없음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라오나토 뷰티스쿨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라오나토 뷰티스쿨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 2) 당사는 라오나토 뷰티스쿨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비고 |
|------------|-------------------------------|---------------------------------------------------|----|
| 메이크업 교육/제품 |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서비스, 상품을 판매할 수 없음 | 1회 위반: 구두 경고<br>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br>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
| 네일 교육/제품   |                               |                                                   |    |
| 피부 교육/제품   |                               |                                                   |    |
| 기타 부대 서비스  |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상대방<br>(고객)    | 상품·용역명                                                           | 제한내용 및<br>조건  | 위반시 책임                                            | 비고 |
|------------------|------------------------------------------------------------------|---------------|---------------------------------------------------|----|
| 경쟁업체<br>타 가맹점사업자 | 당사 또는 지정업체에서 공급받은 모든 상품, 용역('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에 명시된 내역) |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음 | 1회 위반: 구두 경고<br>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br>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용역명                                                           | 권장가격(단위: 원)                          | 가격 통보 방법     | 비고 |
|------------------------------------------------------------------|--------------------------------------|--------------|----|
| 당사 또는 지정업체에서 공급받은 모든 상품, 용역('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에 명시된 내역) | 가맹점 오픈 전 가맹본부에 의해 제시된 상품/서비스 가격표에 명시 | 홈페이지, 유선, 팩스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업종 범위                                                    |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       |
|--------------------------------------------------------------|--------------|-------|
|                                                              | 가맹본부         | 계열회사  |
| ‘LAONATO 뷰티스쿨’과 동일한 업종(메이크업, 네일, 스킨케어, 헤어 등 미용과 관련된 학원 운영사업) | LAONATO 뷰티스쿨 | 해당 없음 |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설정 기준       | 설정방법                                                                                                              |
|-------------|-------------------------------------------------------------------------------------------------------------------|
| 서울시 각 구 1지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후 설정</li> <li>-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li> </ul> |
| 광역시 2지점     |                                                                                                                   |
| 시 단위 1지점    |                                                                                                                   |

※ 단, 특수상권(백화점, 대형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대형쇼핑몰, 대형 아울렛 등)은 위 설정과는 별도의 영업지역입니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 재조정 절차                                                              | 비고                               |
|------------------------------------------------------------------------------------------------------------------------------------------------------------------------------------------------------------|---------------------------------------------------------------------|----------------------------------|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br>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br>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br>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서면 통지후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  
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가맹사업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고객이 이사, 학업 등의 사유로 전학을 희망 할 경우 당사가 정한 규정에  
의해 수강료 정산등과 함께 이동이 가능합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라오나토 뷰티스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  
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유통업체명       | 주소                               | 취급품목                            | 가맹점과의 구분 |
|-----|-------------|----------------------------------|---------------------------------|----------|
| 온라인 | 라오나토<br>쇼핑몰 | www.laonato.co.kr                | 메이크업교육 제품<br>네일교육 제품<br>피부 교육제품 |          |
| 온라인 | 네이버스토어      | smartstore.naver.co<br>m\laonato | 메이크업 제품                         |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 사항 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 연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
|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가맹점                   | 기타 오프라인 | 자사 온라인몰       | 기타 온라인 |
| 2023 | 0%                    | 0%      | 0%            | 0%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 연도   | 가맹점 전용상품 비중 |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
| 2023 | 0%          | 0%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해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이며 갱신계약 시 갱신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 서                                                         | 기간(계약만료일: D-day) |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br>예→②, 아니오→⑦                      | D-180 ~ D-90     |
|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br>예→④, 아니오→③                  | D-180 ~ D-90     |
|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br>예→⑤, 아니오→A                | D-180 ~ D-90     |
|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br>예→B, 아니오→A | ①+ 15일 이내        |

| 순 서                                                                            | 기간(계약만료일: D-day) |
|--------------------------------------------------------------------------------|------------------|
|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br>예→C, 아니오→⑥                                      |                  |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br>예→B, 아니오→D                      |                  |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br>예→B, 아니오→⑧                          | D-180 ~ D-90     |
|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br>예→E, 아니오→A                         | D-60일 이전         |
|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 D-day            |
|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br>(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관련 계약 조문 |
|--------------------------------------------------------------------------------------------------|----------|
|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35조 2항   |
|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35조 2항   |
|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35조 2항   |
| ○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35조 2항   |
| ○ 해당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35조 2항   |
|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35조 2항   |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1) 일반적인 해지사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 해지 사유                                                                                  | 관련 계약 조문 |
|--------------------------------------------------------------------------------------------|----------|
| ○ 가맹점사업자가 기일이내에 대금을 2개월 이상 미결제한 경우                                                         | 제26조 1항  |
| ○ 가맹점사업자의 채무가 현금 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 제26조 1항  |
| ○ 가맹점사업자가 서비스 품질기준과 영업관리 기준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제26조 1항  |
| ○ 가맹점사업자가 감독 및 시정요구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26조 1항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 제26조 1항  |
| ○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 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제26조 1항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아래 가맹본부의 상품을 가맹사업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 제26조 1항  |
|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 제26조 1항  |
| ○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 제26조 1항  |
|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 지급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확인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26조 1항  |
| ○ 가맹점사업자가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26조 1항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을 타가맹점에 공급 또는 경쟁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 제26조 1항  |
| ○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 제26조 1항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 추가하거나 가맹본부에 의해 변경된 서비스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26조 1항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종 업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                                               | 제26조 1항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26조 1항  |

| 일반적 해지 사유                                                                              | 관련 계약 조문 |
|----------------------------------------------------------------------------------------|----------|
| ○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 제26조 1항  |
|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교육규정에 의한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 제26조 1항  |
|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 상품을 자체 조달하여 용도외 사용하거나 이를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 제26조 1항  |
| ○ 가맹점사업자가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 제36조 1항  |

## (2) 즉시 해지사유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즉시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 조문 |
|--------------------------------------------------------------------------------------------------------------------------------------------------------------------------------------------------------------------------------------|----------|
|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제36조 2항  |
|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제36조 2항  |
| ○ 가맹점사업자가 상표사용료, 제품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3개월 이상 지키지 않은 경우                                                                                                                                                                                      | 제36조 2항  |
|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36조 2항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 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br>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br>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br>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제36조 2항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36조 2항  |
|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36조 2항  |

| 즉시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 조문 |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제36조 2항  |
|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 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제36조 2항  |
|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제36조 2항  |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 조건을 수정 사유 발생 시 사전고지 및 교육 진행 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양도 2개월 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가능 조건                       | 양도 절차                                                                                                                                          | 비고      |
|--------------------------------|------------------------------------------------------------------------------------------------------------------------------------------------|---------|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통지(승인 요청 시로부터 1개월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체결(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규계약을 통해 완전한 계약기간 부여가능)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 문의: 관리팀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잔여 계약기간 포함)를 포괄승계하게 되며 이 경우 양수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교육비 및 양수도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1)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구분   | 가능 여부(조건)  | 이전 범위       | 절차                                                                                                      | 비고 |
|------|------------|-------------|---------------------------------------------------------------------------------------------------------|----|
| 상속   | 본부 승인 시 가능 | 모든 권리의무     | 상속인이 서면으로 신청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영업을 승계 할 자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지) -> 당사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이전완료 |    |
| 대리행사 | 본부 승인 시 가능 | 승인 받은 권리 의무 | 상속인이 서면으로 신청 -> 당사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이전완료                                                         |    |
| 업무위탁 | 본부 승인 시 가능 | 승인 받은 권리 의무 |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존속기간 중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와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계약기간 존속기간 중에 귀하가 직접 또는 제3자의 명의로 LAONATO 뷰티스쿨과 동일한 영업을 하거나 경쟁업체의 가맹점을 개설하거나 LAONATO 뷰티스쿨과 동일한 영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당사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경업금지 되는 업종                                                   | 경업허가 절차                                                              | 비고      |
|--------------------------------------------------------------|----------------------------------------------------------------------|---------|
| ‘LAONATO 뷰티스쿨’과 동일한 업종(메이크업, 네일, 스킨케어, 헤어 등 미용과 관련된 학원 운영사업)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문의: 관리팀 |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시간        | 영업일수                      | 비고      |
|-------------|---------------------------|---------|
| 09:00~22:00 | 일요일, 공휴일 제외 영업 단, 보강교육 가능 | 문의: 관리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장 종업원 수 | 직접 근무 여부 | 대체 가능 인력              | 비고                           |
|----------|----------|-----------------------|------------------------------|
| 5명       | 선택사항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관련 자격자 | 업종의 특성상 관련 자격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본 계약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광고 성격                  | 부담비율 |       | 분담 절차                                                      | 비고                               |
|-----------|------------------------|------|-------|------------------------------------------------------------|----------------------------------|
|           |                        | 본사부담 | 가맹점부담 |                                                            |                                  |
| 광고        | 브랜드이미지광고, 상품광고         | 100% | 0%    | 없음                                                         | 온라인키워드광고<br>홈페이지광고등<br>신문,잡지공고 등 |
|           | 가맹점모집+ 상품광고            |      |       |                                                            |                                  |
|           | 가맹점모집광고                |      |       |                                                            |                                  |
| 관측활동      | 전국캠퍼스(가맹점) 사장단 회의에서 결정 |      |       | 광고 계획 공고<br>-> 가맹점의 광고<br>참여결정 -> 가맹<br>점부담액협의 -><br>광고 집행 | 비정기적 관측 행사                       |
| 개별(특별) 행사 | 행사에 따라 달라짐<br>(별도공고)   |      |       |                                                            | 개별 행사, 광고                        |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관측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관측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 적용된 CI, 관측물의 디자인 등의 시안을 사전에 당사에 제출하여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한 가맹본부의 승인을 우선 허가 받아야 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가맹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인하여 가맹계약이 해지되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 가맹계약서 제35조[계약의 갱신과 거절] 제5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가맹계약의 갱신 등) 제4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재계약(갱신) 의사 여부를 묻는 통지에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해지 의사를 계약 만료일로부터 60일전까지 가맹본부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1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계약 만료일 60일전부터 계약만료일 사이에 가맹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맹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1년간 연장된 가맹계약 만료일까지의 상표사용료를 손해의 배상 (위약벌)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31조[비밀유지 의무], 제32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 가맹본부에게 손해의 배상액(위약벌)으로 금 오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37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1일당 금 삼십만원을 손해의 배상액(위약벌)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6)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소요기간                                       | 소요비용           |
|----------------|--------------------------------------|--------------------------------------------|----------------|
| 합계             | -                                    | 42일 내외                                     | 12~13페이지<br>참조 |
| 가맹점사업자 문의      | - 전화, 방문, 홈페이지                       | -                                          |                |
| 상담             | - 전화 상담<br>- 사업내용상담                  | -                                          |                |
| 정보공개서 제공       | - 정보공개 사항 검토<br>-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정보공개서 제공<br>14일 (가맹거래사<br>자문 시 7일) 후<br>계약 |                |
| 가맹계약서 사전<br>제공 | - 계약체결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 사<br>전제공           | 계약체결 1일전                                   |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 D-42                                       |                |
| 가맹금 예치         |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 D-41-40                                    |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D-39-2                                     |                |
| 인.허가           | - 교육청 인가                             | D-10-2                                     |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20-10                                    |                |
| 개점 승인          | - 인허가 여부 점검<br>- 영업시설점검              | D-1                                        |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해당 사항 없음('점포환경 개선을 일체 요구하지 않으며, 가맹사업법 제12조2 규정 및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점포환경 개선의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대상 및 내용                                                                 | 절 차                                                                                                                                                                | 비용부담                     | 비 고        |
|----------------|-------------------------------------------------------------------------|--------------------------------------------------------------------------------------------------------------------------------------------------------------------|--------------------------|------------|
| 가맹본부<br>요청 시   | 상품, 설비(집기),<br>판매촉진, 고객관리,<br>위생관리, 교육훈련,<br>회계 등 가맹점 운영<br>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가맹본부<br>부담               | 문의:<br>관리팀 |
| 가맹점사업자<br>요청 시 | 상품, 설비(집기),<br>판매촉진, 고객관리,<br>교육훈련, 회계 등<br>가맹점 운영 전반에<br>대한 경영지도       |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가맹점부담<br>(요청 시 별도<br>협의) | 문의:<br>관리팀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최소시간     | 비용<br>(단위: 만원 / 부가세포함) | 비고 |
|-----------|----------|------------------------|----|
| 신규지사 종합교육 | 1일 (6시간) | 없음                     | -  |
| 관리자 교육    | 1일 (3시간) |                        | -  |
| 강사부 교육    | 1일 (6시간) |                        | -  |
| 관리부 교육    | 1일 (3시간) |                        | -  |

### 3. 교육·훈련의 주체

| 구분        | 참석대상                  |
|-----------|-----------------------|
| 신규지사 종합교육 | 신규 가맹사업자 및 가맹사업자의 직원  |
| 관리자교육     | 가맹점사업자                |
| 강사부 교육    | 캠퍼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
| 관리부 교육    | 캠퍼스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직원 |

###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반 교육을 거부하거나 자신의 직원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 및 훈련은 당사 가맹사업 브랜드의 이미지와 해당 가맹사업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오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에서 근무 할 수 없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 연번 | 지역 | 직역점명 | 주소 |
|----|----|------|----|
|    |    |      |    |

※ 해당 없음

###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 비고 |
|---------------------|----|
|                     |    |

※ 해당 없음

### 3.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산정기준 |
|----------------------|------|
|                      |      |

※ 해당 없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관리팀(070-4652-3588)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 ~ 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서식]

### 가맹점사업자 인근의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에 점포를 개설하고자하는 지역에서 가까이 있는 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번 | 가맹점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 비고 |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제공일: 20   년   월   일

[별첨2 서식]

###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가맹점사업자용)

본인은 \_\_\_\_\_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함에 있어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1.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1)가맹본부의 일반현황 2)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3)가맹본부 및 임원의 범위반 사실 4)가맹점사업자의 부담 5)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6)가맹점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7)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8)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 2. 수령자(가맹점사업자)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성명: \_\_\_\_\_(인)

#### 3. 제공자(가맹본부)

가맹본부명: \_\_\_\_\_ 대표자명: \_\_\_\_\_(인) 제공일: 20 \_\_\_\_년 \_\_\_\_월 \_\_\_\_일

-----절취선-----

###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가맹본부용)

본인은 \_\_\_\_\_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함에 있어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1.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1)가맹본부의 일반현황 2)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3)가맹본부 및 임원의 범위반 사실 4)가맹점사업자의 부담 5)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6)가맹점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7)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8)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 2. 수령자(가맹점사업자)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성명: \_\_\_\_\_(인)

#### 3. 제공자(가맹본부)

가맹본부명: \_\_\_\_\_ 대표자명: \_\_\_\_\_(인) 제공일: 20 \_\_\_\_년 \_\_\_\_월 \_\_\_\_일

[별첨3] 가맹본부 매출 자료

[2021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2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3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